출판계 전면 재검토 요구

출판계 요구 사항 묵살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문화관광부가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출판계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9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등 16개 출판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출판권을 축소, 말살하려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식강국의 기반인 출판지식산업 진흥을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2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출판문화협회 강희일 부회장은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서 출판계 요구 사항은 완전히 묵살되고 있다"며 "우리 출판인들은 이번 개정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

이번 일부개정안이 출판계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출판'과 '출판권'에 관한 조항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리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3장 출판권"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제2장 제7절 출판권"으로, 그리고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급기야 "제2장 제7절(배타적 이용권) 제63조 출판에 관한 특례"로 법적 위상이 대폭 약화되었다.

또한 출판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판면권(출판물 기획, 저작 지원, 편집, 제작 등에 대한 출판인의 권리) 보호 요구와 디지털 출판을 위한 전송권, 판매용 도서에 대한 대여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판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조항도 턱없이 부족하다.

출판평론가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이번 일부개정안은 저작권자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오로지 정책 담당자의 의견만 반영된 법안이다. 한미FTA 시행까지 국회 비준일로부터 2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화산업에 있어서만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와 배경이 의심스럽다. 또한 한미FTA에서 70년으로 연장된 저작권 보호기간이 한유럽 FTA 협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한데도 그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6년 문화산업 통계〉에 의하면 출판은 전체 문화산업의 35.9%를 차지하는 최대 분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산업의 주춧돌이다. 특히 국내 디지털 출판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북을 선보일 만큼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출판 정의는 확장되고, 출판권 범위는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문화관광부의 이번 개정안에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이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저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출판계 비난이 쏟아지자 "출판계와 추후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부 장영태 차장은 "10월 초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실무 담당자들과 출판 단체 대표들이 만나 출판계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출판권'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